

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 차량구매부서(장)
제목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대통령령 제33107호(2022.12.20.)로 일부 개정·공포된 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의 일부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3. 본 내용은 우리 조합 웹사이트(www.scra.or.kr) 「회원사마당-공문알림」에서도 확인 가능하며, 개정법률 전문은 법제처 웹사이트(www.moleg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개정내용

○ 도시철도법 시행령 [별표2]

-친환경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

* 종전의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.

※ 붙임 :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 (발췌) 1부. “끝”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



수신자 회원사 전체

담당 박종우	부장 김진석	실장 박상광	상무 성정현	이사장 배준영
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

시행 서자대조 22-2604 (2022.12.20.) 접수 - ()
우 06704 서울 서초구 방배로22길 18,4층(방배동,카렌탈비즈니스센터) / www.scra.or.kr
전화 (02) 525-9082 전송 (02) 525-9063/ 이메일 scra@scra.or.kr / 비공개

※ 불입

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

○ 주요내용

- 친환경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

<신·구 대비표>

종 전	개 정 후
1. ~ 16. [생략] ※ 비고 1. (생략) 2. 가 ~ 자 (생략) 차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 <u>(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</u>하려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50만원(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)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 카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<u>(2022년 12</u>	1. ~ 16. [현행과 동일] ※ 비고 1. (현행과 동일) 2. 가 ~ 자 (현행과 동일) 차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--- (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카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--- (2024년 12</u>

<u>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</u>하려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(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한다)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	<u>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

<부 칙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